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 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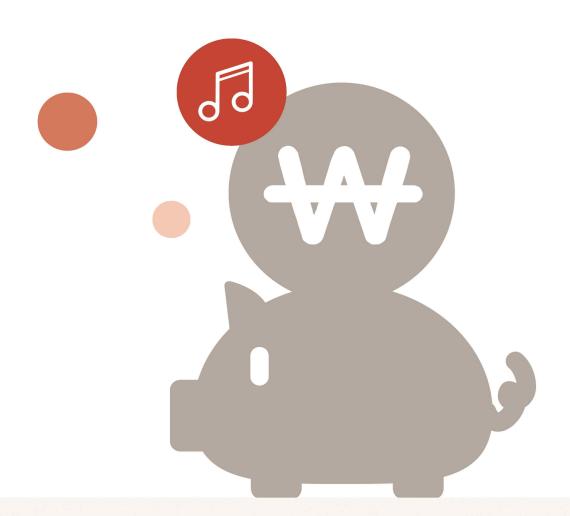
meritz 메리츠화재

보험약관

판매버전 2.0

판매개시 2024. 1. 19

※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개인신용정보는 반드시 고객님의 동의를 얻은 후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제공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활용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 喜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 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 喜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마케팅 목적의 이용·제공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하며, 단,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이행을 위한 동의는 체결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동의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 전화: 02-2122-4000, 홈페이지: http://www.nice.co.kr
 SCI평가정보(주) - 전화: 02-3445-5000, 홈페이지: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화: 02-708-6000, 홈페이지: http://www.kcb4u.com

바. 본인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제38조의3에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거래종료일은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 본인인증센터 > 개인정보보호 > 개인신용정보관리

3. 본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02-3786-255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02-3702-8500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금융민원센터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 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초금융그룹**은 메리초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 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 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마. 그 밖에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11.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입니다.

111.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단,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

| 메리츠금융지주 | 고객정보관리인 |
|-----------|---------|
| 메리츠화재 | 고객정보관리인 |
| 메리츠증권 | 고객정보관리인 |
| 메리츠캐피탈 | 고객정보관리인 |
| 메리츠자산운용 | 고객정보관리인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고객정보관리인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 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 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 및 보상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콜센터(TEL: 1566-7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보험금 지급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 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등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을 대행해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지급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 메리츠화재보험회사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재심사 청구

•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메리츠화재보험회사 소비자

보호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여 신청
-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1 메리츠화재 소비자보호센터
- ✓ 전화 상담: 1566-7711(ARS 5번 → 재심사청구문의)

안내말씀

귀하께서는 저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02-6464-3535(3522)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보험 주요 민원 사례



알릴 의무

P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유의 사항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미이행 A씨는 지인인 B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원했으나 남편 설득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여 보험가입하였고 추후 보상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유의 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요설명 미이행

P씨는 갱신 담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불만 제기

유의 사항

갱신형특약의 보험료는 갱신도래시 연령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 할 수 있습니다.가입 전 고객님께 안내드리는 가입설계서 상의 갱신형특약 예상보험료는 가입시점 기준으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임으로 가입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유지

K씨는 설계사에게 피보험자 변경을 해달라고 말해놓고 잊고 있었다가 추후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유의 사항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하며, 변경 내용에 대해 증권 또는 배서승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K씨는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에 통지하였으나 직업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현재 계약의 보험료 및 담보가 변경됨을 안내받고 불만 제기

유의 사항

표준약관(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에 근거하여 직업 급수(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 가입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Guide Book

※ 同 guidebook은 보험규정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주요 내용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mark>중요사항</mark>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 **보통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약(특별약관)**: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약관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찾기(보통약관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 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4조(연금의 지급)

39P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mark>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mark>」도 **반드시 확인**할 <mark>필요</mark>



청약철회

제9조(청약의 철회)

40P



3

계약취소

제1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0P





계약 소멸

제12조(계약의 소멸)

42P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특별약관

57P



6

계약後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특별약관

56P 57P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45P





부활(효력회복)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5P





해약환급금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23조**(해약환급금)

46P 47P





보험계약대출

제24조(보험계약대출)

47P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 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항목 11P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 본문 Box안 이세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 → QR코드 10P
- / '관련법규'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의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meritzfire.com), 고객 **콜센터**(1566-7711)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약관 요약서

- I 보험계약의 개요
- Ⅲ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 회사명: 메리츠화재

■ 보험상품명: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2401

■ 보험상품의 종목: 연금보험

1. 상품의 주요 특징

피보험자의 신체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2401

● 무배당 X :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② 연금저축 :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저축, 연금 등]



예금자 보호

Ⅲ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Ţ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주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감액지급

| 보장명 |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면책기간 |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감액지급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90일 | 가입금액의 50% |
| 유사암진단비 | - | 가입금액의 50% |

▶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mark>보험금 지급 한도</mark>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담보의 보험금 지급 한 도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담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보장명 | 보장한도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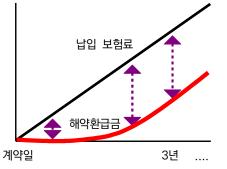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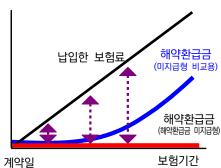
-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 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
- 감하여 지급
 ②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mark>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mark> 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운영 상품에 한함)

(예시① 일반상품)

(예시②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





3. 갱신 시 보험료인상 가능성

갱신형 담보의 경우 <mark>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mark> 있습니다.



· 주의

갱신형 계약은 <mark>갱신할 때 마다</mark>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mark>보험료</mark>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해당 담보 : 담보명 앞에 "갱신형"이 붙어 있는 담보

4. 실손보상형 담보 / 실손의료보험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부적절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 주의

-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제축성보험



주의

-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mark>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mark>
-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금리연동형 보험(적립보험료 운영 상품에 한함)



최저이율 보장 경과년도별 상이

주의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 용됩니다.
-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5년이하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3%입니다.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 도

③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주의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 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9조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mark>청약을 철회</mark>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10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3.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11조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효과

트특별약관 제9조,제1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mark>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mark>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경우 보험계약前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기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5. 보험계약後 알릴 의무 및 위반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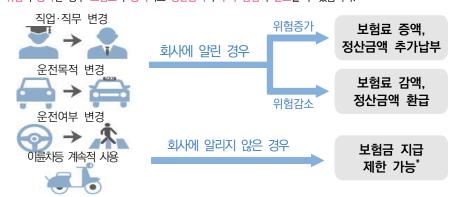
티보통약관 제10조, 제11조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mark>직업·직무변경 등이 발생</mark>한 경우 <mark>지체없이</mark>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경우, 보험요율에 따른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 사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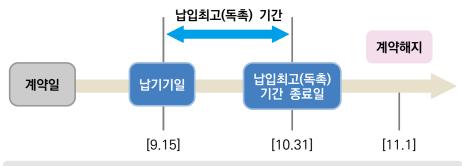
旦보통약관

제19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mark>납입최고(독촉) 기간</mark>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부최고(독촉)기간: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예시]



- ※ 납부독촉(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부연체: ①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 ②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약관

제20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24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환급금 내역서 | | | | |
|---------|-------|------|-------|-------|
| 해양화급금 | | 공제금액 | | 시스려애 |
| 에렉된답급 | 원금 | 이자 | 계 |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9. 보험금청구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제5조,제6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 | | | | | |
|----------|--------------|-------------|------------|--------------|--|----------------|
| 구분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수술 확인서 | 통원 확인서 | 기타 | 공통 |
| 사망 | ● (사망진단서) | | | | 영상자료 등 | |
| 장해 | ● (장해진단서) | | | | 장해내용에 따라 영상자료 등 | |
| 진단 | • | | | | 진단사실 확인서류 (검사결과지, 영상 등) | |
| 입원 | • | • | | | | |
| 수술 | • | | • | |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 청구서 |
| 실손 | • | ● (입원시) | ● (수술시) | ● (통원시) | 비급여 발생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 개인정보동의서 |
| 치아 | 치과치료 확인서 | 진료차트 | X-ray영상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기타 | |
| 보철 | • | • | • | | | |
| 보존 | • | • | Δ | | | |
| 그외 | Δ | Δ | Δ | Δ | 담보별로 필요서류가 상이하 니 홈페이지내 청구서류안내 참조 | |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청구담보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2401 보통약관

| 가입자 유의사항 | 27 |
|---|----|
| 주요내용 요약서 | 30 |
| 보험용어 해설 | 33 |
| |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7 |
| 제1조(목적) | 37 |
| 제2조(용어의 정의) | 37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20 |
| 제2전 도엄급의 자급 | |
| 제3조(역합이뮬에 관한 사망) | |
| 제4조(언금의 지급) | |
|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
| 세0조(도움구착자의 사장) | |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39 |
|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 39 |
| | |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39 |
|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 | 39 |
| 제9조(청약의 철회) | 40 |
| 제1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40 |
|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41 |
| 제12조(계약의 소멸) | 42 |
| 제13조(보험나이) | 42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42 |
|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42 |
| 제15조(특별계정의 운용) | 44 |
| 제16조(보험료의 납입) | 44 |
|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44 |
| 제18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44 |
|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45 |
|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5 |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4F |
|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
|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
| 제2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
| 제23조(해약환급금) | |
| | |

| 제24조(보호 | 封계약대출) | 47 |
|---------------|---|-----|
| 제25조(계약 | 약자배당금의 지급) | 47 |
| | | |
| 제7관 분쟁 | !의 조정 등 | 48 |
| 제26조(분경 | 맹의 조정) | 48 |
| 제27조(관형 | 할법원) | 48 |
| 제28조(소양 | 멸시효) | 48 |
| 제29조(약공 | 관의 해석) | 48 |
| 제30조(설명 | 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48 |
| 제31조(회 | 사의 손해배상책임) | 48 |
| 제32조(개 | 인정보보호) | 48 |
| 제33조(준 | 거법) | 49 |
| 제34조(예급 | 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49 |
| | | |
| |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2401 특별 | 약관 |
| | | |
| | H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 |
| | | |
| | H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 |
| |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추가특별약관 | |
| | II(유사암제외)보장 추가특별약관 | |
| | 진단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
| | 상해후유장해(3~79%)보장 추가특별약관 | |
| | 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 |
| ■ 선선건X | I 중에서 중도경 구기국로국단 | |
| 별표 | | 80 |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
| | 장해분류표 | |
| |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
| |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 |
|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
| | | |
| 인용 법 규 | 정 | 99 |
| 【법규1】 | 개인정보 보호법 | 99 |
| 【법규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01 |
| 【법규3】 | 민법 | 105 |
| 【법규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05 |
| 【법규5】 | 의료법 | 107 |
| 【법규6】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109 |
| 【법규7】 | 장애인복지법 | 110 |
| 【법규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110 |
| 【법규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12 |
| 【법규10】 | 상법 | 113 |
| 【법규11】 | 상법 시행령 | 113 |

| 【법규12】 | 전자서명법 | 11 | 4 |
|--------|-------|----|---|
| | | | |

기타 제도성 특별약괸

| ■ 색이 | 125 |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122 |
| 단체취급 특별약관 | |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20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119 |
| 전자서명 특별약관 | 118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 117 |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2401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보험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3)의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한도액 =
$$\frac{$$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times 1.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개시시점 | 연금지급기간 |
|---------|------------------------|
| 55세~59세 | 10년, 15년, 20년, 25년 |
| 60세이상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주)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개시시점 | 연금지급기간 |
|----------------|------------------------|
| 가입후 경과기간 5년~9년 | 10년, 15년, 20년, 25년 |
|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상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주)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 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1)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적용 시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 합계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3.3% ~ 5.5%, 지방 소득세 포함
 - 2.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 합계액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3)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1. 보험계약자의 사망
 - 2. 천재지변
 - 3. 보험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봅니다) × 150만원
- 4. 보험계약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보험계약자의 해외이주
- 4) 3) 1.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보험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5) 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보험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 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1) 부터 3)을 준용합니다.

- 7)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 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8) 보험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이율([연금]공시이율II)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 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질병 관련 보장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OD, DN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 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 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소멸(연금 관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그때부터 소멸됩니다.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6.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특약가입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특약가입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8. 연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1) 연금의 지급: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2)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며, 이를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신체보장관련 특약가입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31일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적용)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공제금액 안내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기본계약, 40세가입,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20만원)

| 구분 | 목적 | | 시기 | 비용 |
|---------------------|------------------------|---------|-----------|---|
| 보험 관계비용 | - 기약제걸 - 비용 - 기명 | 판매보수 | 매월 | 10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1.4% (2,753원) |
| | | 유지보수 | 매월 | 7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1.9% (3,780원) |
| | | 관리 용 | 매월 |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6% (7,200원) 납입기간이후 : 3,000원 |
| 연금수령 연금 기간중비용 관리 | | . –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 해약공제 비용

|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이상 |
|-----------------|-------|------|------|------|------|------|----|------|
| 해약 공제금액 (만원) | 25 | 21 | 16 | 12 | 8 | 4 | _ | _ |
| 해약 공제비율 | 10.3% | 4.3% | 2.3% | 1.3% | 0.7% | 0.3% | _ | _ |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 구 분 | 목 적 | 人门 | 비용 | |
|---------|----------------|-------|---------------|--|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유지 · 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1.6% | |
| 중도인출수수료 |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 중도인출시 | 없음 | |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주기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성립일 이후부터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납입한도는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총 기본보험료(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함.

3)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관련 용어

| 용어 | 정의 |
|-----------|---|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보험 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 니다.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용어 | 정의 | | |
|----|--|--|--|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 |
| 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 | |
| 장해 | 【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 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 |

| 용어 | 정의 | | |
|--------------------|--|--|--|
|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 |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를 말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항목) 분류 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해당 대상질병(항목)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항목)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

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용어 | 정의 | |
|------------|---|--|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 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
| 평균 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75% 입니다. | |

| 용어 | 정의 | |
|------------|---|--|
| 계약자 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해약 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 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용어 | 정의 | |
|------|---|--|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 |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

5 보험료 관련 용어

| 용어 | 정의 | | |
|------|------------------------|--|--|
|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 | |
| 기본 |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계약 보험료와 | | |
| 보험료 |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 | |
| |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성립 | | |
| | 일 이후부터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 | | |
| |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 | | |
| | 약자가 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 | |
| 추가납입 | 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 | |
| 보험료 |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 | | |
| | 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 | |
| | 총 기본보험료(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 | |
| |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2배 이 | | |
| | 내로 합니다. |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순보험료(기본보험료(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연금]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연금]공시이율II는 매월 마지막 날(다만,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직전의 영업일로 합니다) 이전에 산출하며, 그 다음달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연금]공시이율!!를 결정합니다.
- ④ [연금]공시이율II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2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가입후 경과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연복리 0.3%로 한다.
-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연금]공시이율II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⑥ 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연금]공시이율II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 7 세부적인 [연금]공시이율II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연금]공시이율II 적용에 관한세부지침」을 따릅니다.

【적립이율】

순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 율을 말합니다.

【[연금]공시이율Ⅱ】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가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 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 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연금]공시이율II에 따라 적립되며 [연금]공시이율II가 0.1%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연금]공시이율II(0.1%)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후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2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가입후 경과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연복리 0.3%)로 적립됩니다.

제4조(연금의 지급)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계약의 세제 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제3조(적립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적립이율(이하「[연금]공시이율 비」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적립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 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7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제1항의 연금액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4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

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7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하여 적용합니다.

제9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 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 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① 서면교부
-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 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예시】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 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 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 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 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5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 ①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 ②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③ 기본보험료
 - ④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 자로의 계약자 변경
 - 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2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3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 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4월 14일 - 1988년 10월 2일

= 34년 6월 12일 = 35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계약자의 경우 15%) 세액공제)(이하「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수1)} 현재 연금한도액 = <u>연금재원평가총액</u>×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 일로 함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개시시점 | 연금지급기간 | |
|---------|---------------------------|--|
| 55세~59세 | 10년, 15년, 20년, 25년 | |
| 60세이상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

주)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개시시점 | 연금지급기간 | |
|----------|----------------|--|
| 가입후 경과기간 | 10년, 15년, 20년, | |
| 5년~9년 | 25년 | |
| 가입후 경과기간 | 5년, 10년, 15년, | |
| 10년이상 | 20년, 25년 | |

주) 만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 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 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 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적용 시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 합계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 ~5.5%, 지방소득세 포함
- 2.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 합계액 1,500만원 초과인 경우: 16.5%, 지방소득세 포함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 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 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봅니다) × 150만원
-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 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 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 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图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 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 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 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연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소 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15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 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특별계정」이라 합니 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 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 약성립일 이후부터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 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 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9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이 있어 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 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8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동안 기본보험료(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유예 이후의 이 계약의 기본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 여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항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 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 금(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이계약의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를 매월(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해당 납입기일(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图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납입유예기간 동안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특별약관계약은 해지됩니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의 연 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변 경되지 않습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한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이 계약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계약자적 립액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금액과 이자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 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계약의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를 매월(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해당 납입기일(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5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항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변경되지 않 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 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 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서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이라 합 니다)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 경과보험료 등의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 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7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 ①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명당 납입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②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③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 야
 -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 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 ④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 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 약 포함)
 -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약 포함)
 - ⑤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 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제3항에 따른 이체시 계약자가 55세 미만이거 나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⑦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부터 제7항 까지 규정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 퇴 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 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 약을 말합니다.

제2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 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 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계약의 적립이율을 적 용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제1항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 ③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1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 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 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에 연금 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 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 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제4조(연금의 지급) 제1 항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합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 ③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 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 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3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6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민법」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 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 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 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 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3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 리하여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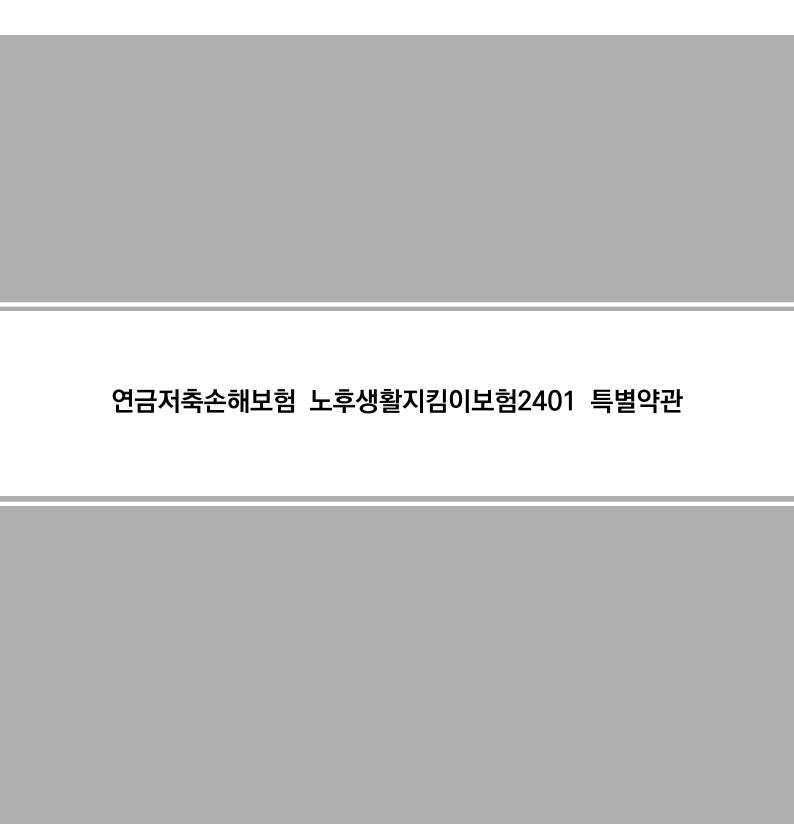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 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 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 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 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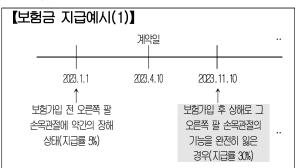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图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 설명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차감한 지급률 25% (=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2)】



※ 설명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 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 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 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제6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⑥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 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 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 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 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 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 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

로 추정한다.

【사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일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 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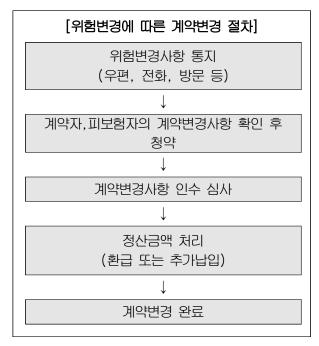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 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 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 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 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험변경시 해약환급금 정산】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 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0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图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 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7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 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1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 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 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 ①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 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기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 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6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 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청약서상 기 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4월 14일 - 1988년 10월 2일

= 34년 6월 12일 = 35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1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 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한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 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제1회 보험료 및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이 특별약 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 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 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 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 되는 경우
 -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 한 경우
 -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 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보험료 변경내역 및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①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회사의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 종료나이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에 상해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 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 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사망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수익자에게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 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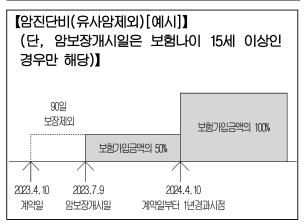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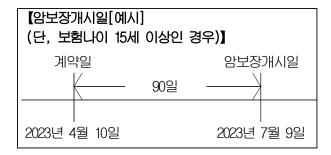
①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 진단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 지급금액 | | |
|-----------|---------|---------|--|
| 구 분 | 계약일부터 | 계약일부터 | |
| 1 - | 1년경과시점 | 1년경과시점 | |
| | 전일 이전 | 0 후 | |
| 암(유사암제외) | | | |
|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 보험가입금액의 | |
| (단, 최초1회에 | 50% | 100% | |
| 한하여 지급) | |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따라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이하「암보장개시일」이라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분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②「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 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나이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이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추가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특별약관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추가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에는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특별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 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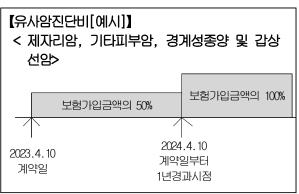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 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특별약관(단, 제3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은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④ 유사암진단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 지급금액 | |
|--|-------------------|-------------------|
| 구 분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 | 전일 이전 | 이후 |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시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 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 조)을 말합니다.

④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⑤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유사암」이라 함은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 「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⑥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 을 때, 회사는 나이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 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이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 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 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추가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 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특별약관(단, 제3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은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 선원단체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중 또는 직무중 이외의 일상생활중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직무는 아래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① 총 톤수 5톤 이상의 선박
 - ②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여객선 이 외의 선박
 - ③ 총 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계약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에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 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5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 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 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 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사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 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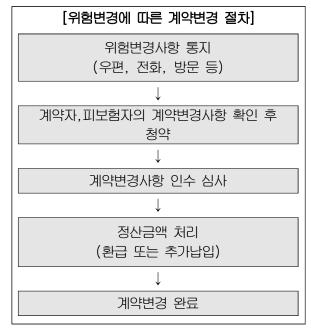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 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 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 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험변경시 해약환급금 정산】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 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 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 (0.3 ÷ 0.5) = 6천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 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 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5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0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图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 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7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 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1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 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 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 니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 ①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②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 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기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6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 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4월 14일 - 1988년 10월 2일

= 34년 6월 12일 = 35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1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80% 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 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 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제1회 보험료 및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 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이 특별약 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 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 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例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21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선원단체상해후유장해(3~79%)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중 또는 직무중 이외의 일상생활중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79%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직무는 아래의 선박에 탑승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① 총 톤수 5톤 이상의 선박
- ②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여객선 이 외의 선박
- ③ 총 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추가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추가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추가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图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보험금은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설명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차감한 지급률 25% (=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2)】



※ 설명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

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제3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 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선원단체상해80% 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선원단체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중(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선박탑승 이외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이하「직무중」라합니다) 또는 직무중 이외의 일상생활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직무는 아래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① 총 톤수 5톤 이상의 선박
 - ②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여객선 이 외의 선박
 - ③ 총 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 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사망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단, 제4조(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 택 등)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선원단체상해80% 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
|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특별약관의 보험금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연금 (보통약관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 | [연금]공시이율॥ |
| | 보험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 1년이내 : [연금]공시이율II 의 50% |
| 제4조 제1항) | 글누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초과기간 : [연금]공시이율II 의 40%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보통약관 제23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 1년이내 : [연금]공시이율II 의 50% |
| 제1항)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 청구일까지의 기간 경우 | 1년초과기간 : [연금]공시이율II 의 40% |
|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포함)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연금]공시이율II을 적용하 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 며, 일자 계산합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특별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 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2)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 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까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 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 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 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 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 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 10 |
|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 5 |
| CH CH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 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 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 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 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 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 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 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 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 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 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 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 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 | 45 |
| 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 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 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 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 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 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 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 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항목 | 내 용 | 점수 |
|--------------|-----------------------|----|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 14 |
| | 양측 전정기능 감소 | 10 |
| _ <u>소</u> 선 | 일측 전정기능 소실 | 4 |
|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 20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 |
| |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 |
| 기능 |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 | 12 |
| 장해 소견 | 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 | |
| | 추어야 하는 경우 |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 8 |
| |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 | |
| | 는 경우 | |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 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 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

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 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 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함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 100 |
| 장해를 남긴 때 |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 | 40 |
| 한 장해를 남긴 때 |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 20 |
| 장해를 남긴 때 |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 | 10 |
| 의 장해를 남긴 때 |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 5 |
| 장해를 남긴 때 |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을 벌림)운동, 삼킴(연 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 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이나 저 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 치)간 최대 개구(입을 벌림)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 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 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 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 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 우
 - 나) 위이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 치)간 최대 개구(입을 벌림)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 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 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 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입을 벌림)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 하며, 최대 개구(입을 벌림)상태에서 위·아 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 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

- 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 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 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 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 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 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 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 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 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 한다.
- 11) 놔중추신경계 손상(정산인지기능 저하, 편 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 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 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 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

- 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 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 미만의 반흔(흉터)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 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 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 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 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 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 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 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 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 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 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 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 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 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 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 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 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 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 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 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 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 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 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 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 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 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이상 (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 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 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 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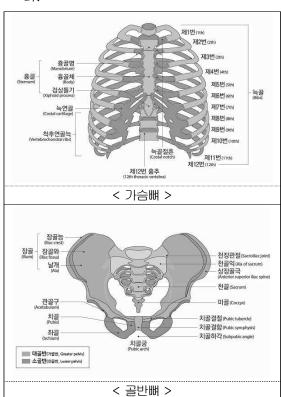
가. 장해의 분류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 15 |
| |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 |
| | 기형을 남긴 때 | |
| 2) |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 | 10 |
| | 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나. 장해판정기준

1) "제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 (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 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 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녹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 | 30 |
| 전히 잃었을 때 | |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 | 20 |
| 한 장해를 남긴 때 |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 | 10 |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 | 5 |
| 간의 장해를 남긴 때 |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 20 |
| 긴 때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 10 |
| 긴 때 |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 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 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 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 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 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 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

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 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 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 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 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 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 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 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 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 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 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 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

-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 30 |
| 완전히 잃었을 때 |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 20 |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 10 |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 5 |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 20 |
| 긴 때 |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 10 |
| 긴 때 |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

- (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 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 함하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관 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 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 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 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 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 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이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

(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 (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 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 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 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 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 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 | 10 |
| 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 | 30 |
|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 10 |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 | 5 |
|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
| 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 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 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 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 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 퍼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 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 | 5 |
| 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 20 |
|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 8 |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 | 3 |
|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
| 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

- 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 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 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 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 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 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75 |
| 용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 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 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 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 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 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 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 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 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 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 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 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 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 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 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 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 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 | 10~100 |
| 에 제한을 남긴 때 |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8) 심한 치매 : ODR 척도 4점 | 80 |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의 공식이 세인되었을 때을 고만다. 다 가이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① 적 절한 음식섭취, ① 대소변관리,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작(AULS) 제번 중에 중기표 등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 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하다.
-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 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 한다.
- 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 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 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 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라 함은 장해판성 식선 1년 UIS 시속목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자마 어디는 아내로 르르니. 시 년드나.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 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 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 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마 소지품 및 금전관 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 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 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 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 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 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 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 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 지 않는다.
 -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 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 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 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되 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 다.
-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 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 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 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 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 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 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 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 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 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 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 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 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 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 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 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할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배뇨,배변 상태(15%)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
|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상병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않습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 번호 |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OO~C14 |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C26 |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 C30~C39 |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C41 |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C43~C44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C49 |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C58 |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060~063 |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064~068 |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 | 069~C72 |
| 성 신생물 |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C73~C75 |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 C76~C80 |
| 악성 신생물 |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C96 |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 20. 골수섬유증 | D47.4 |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않습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 D01 |
| 암종 | |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 4. 제자리흑색종 | D03 |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 D07 |
| 암종 |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않습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 번호 |
|--|--------------------|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 D37 |
| 미상의 신생물 |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 D38 |
|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 D39 |
|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 D40 |
| 의 신생물 | U 1 0 |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 D41 |
| 신생물 | |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 D43 |
| 미상의 신생물 |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 D44 |
| 신생물 | 0.47.0 |
|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 세포 종양 | D47.0 |
| - 제포 공앙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루불리병증 | D47.2 |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 D47.2 |
| N. 기다 당시된 담드, 오늘 및 된던 오락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U 4 1.1 |
| 0007 월0 12 메07 년0월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 | D47.9 |
| 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 311.0 |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 D48 |
|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규정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 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 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 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 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 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 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규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 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10. (생략)

제17조(적합성원칙)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 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 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 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 는 처분 목적
 - 나. 재산상황
 -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 3. 대출성 상품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나. 신용 및 변제계획
-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 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 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 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 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 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 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 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 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이자율 •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 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 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 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 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 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 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 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 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 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

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 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 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 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 리지 아니하는 행위
-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 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 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 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 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 위
-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 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 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 위
-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제42조(소액분쟁시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 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일 것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 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 간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 일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 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 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 "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 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 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 · 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 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한다.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 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 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 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 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 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 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 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 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 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받아야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하락할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 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 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 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 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 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하는 경우
-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 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 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 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 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 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 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법규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 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 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 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 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 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 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 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 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 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 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 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 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 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 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 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 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 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①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6]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 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 다.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 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 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 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삭제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 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 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되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 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 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 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 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 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 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 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 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
 - 안면 무위의 면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성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법규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 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 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 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

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규1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 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었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상법 시행령

-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 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 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 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을 것

[법규1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 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 다는 사실
 -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 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 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 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 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 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등)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

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 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 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 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 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 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종 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이 륜 자 동 차 | 배 기 량 이 50cc 미만 (최고정격 출력 4킬 로와트 이 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 이 하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 트 이하) 인 것 | 배 기 량 이 100cc 초과 260cc 이하 (최고정격출 력 11킬로와 트 초과 15 킬로와트 이 하)인 것 | 배 기 량 이 260cc (최 고정격출력 15 킬로 와 트)를 초과 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 |
|-----------|-----|---|--|--|
|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 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
| 이륜 자동차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 쾌한 구조인 것 | | |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

※ 비고

-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 · 너비 · 높이에 따라 규모 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 · 너비 ·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 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 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 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1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각 목의 사항을 나타 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 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 다는 사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 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로 계약 안내자료를 드림으로써 회사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 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 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합니다)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2인 이내(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에서 지정(제4조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 상의 배우자
-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 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 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 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 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 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 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 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 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 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 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 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 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 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 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 약관의 제8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 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 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 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 보험자는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 니다.
-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 업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 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 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 체
-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 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우리회사(이하「회 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 ①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 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 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 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 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다만, 피보험자 추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 야 할 계약자적립액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 의 보장은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 터 시작합니다.
- ②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추가시에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 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 의 승인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 간이 적용됩니다.
- ③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추가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추가 또는 교체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명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 자수가 증가하여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 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필요시 진료기록 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 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제출)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이 없 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 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를 적용하지 않으 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 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계 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 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 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 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 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 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 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이동의 범위)】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①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

- 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 은 장애인인 경우
-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 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 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 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 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 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라 합니다) 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 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 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계약을 「소득 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 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23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 자가 2023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3년 1월 15일 ~ 2023년 5월 31일)에 납입 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3년 특별세액공 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 자가 2023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3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 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 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의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가나다순 특별약관 색인

<기흐 및 숫자>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 53 |
|------------------------------|-----|
| ①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 62 |
| ②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추가특별약관 | 63 |
| ③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추가특별약관 | 64 |
| ④ 유사암진단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66 |
| ■ 선원단체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68 |
| ■ 선원단체상해후유장해(3~79%)보장 추가특별약관 | 77 |
| ■ 선원단체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 78 |
| | |
| <=> | |
| 단체취급 특별약관 | 121 |
| | |
| < => | |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20 |
| | |
| <o></o> |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 117 |
| | |
| < >> | |
| 전자서명 특별약관 | 118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119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122 |

meritz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고객콜센터



§ 1566-7711

보험가입 / 보험료산출 / 계약조회 / 계약변경 / 제지급금안내 / 제증명서발급 / 사고접수 사고상담 / 사고조회 / 대출상담 / 이자납입안내 / 대출만기안내